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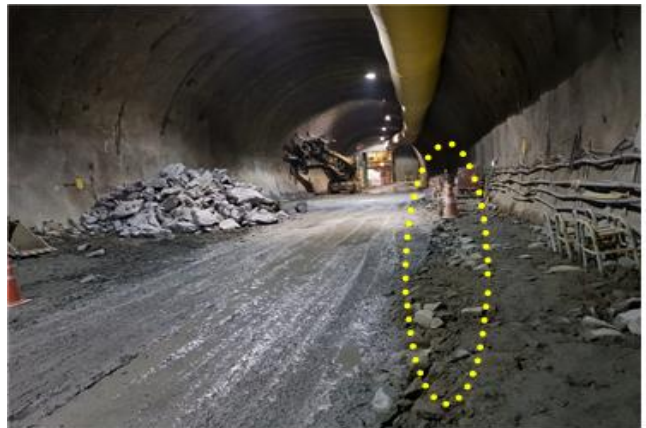
# 정기(기동점검) 점검 결과보고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 점검일시 : 2020.06.18 (목)
- 점검결과
- ◆ 점검자 : 정진혁

○ 가설통로 안전(토목부)

- 난곡사거리 SET-BACK 아스콘포장 공사 시에 시민과 장비가 교행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설통로 분리가 미흡하여 시민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상태로 향후 유사 공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포함한 세부적인 시공계획서 작성 및 관리 요망
- 터널 내 근로자 가설통로에 경계가 미흡한 구간이 일부 있으므로 조치 요망
- 터널 작업장으로 내려가는 가설계단 중 최종단이 디딤 폭이 좁아져 내려가다가 작업자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조정 요망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제22조(통로의 설치), 제200조(접촉방지)
- ※ 건설안전 기본지침(개정) 공통-002(작업발판 및 계단)



○ 가설통로 안전(토목부)

- 난곡사거리 SET-BACK 아스콘포장 공사는 현재 바닥면 일부가 고르지 않아 시민이 이동 중 전도될 수 있으므로 안전시설 위치를 조정하여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조치 요망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제22조(통로의 설치)



○ 중량물취급 안전(토목부)

- 상수관 이설공사에서 1줄 길이로 관로를 인양할 경우 빠지면서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줄 길이로 인양 및 하역하도록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 및 관리 요망
- ※ 건설안전 기본지침(공통) 3. 양중작업의 낙하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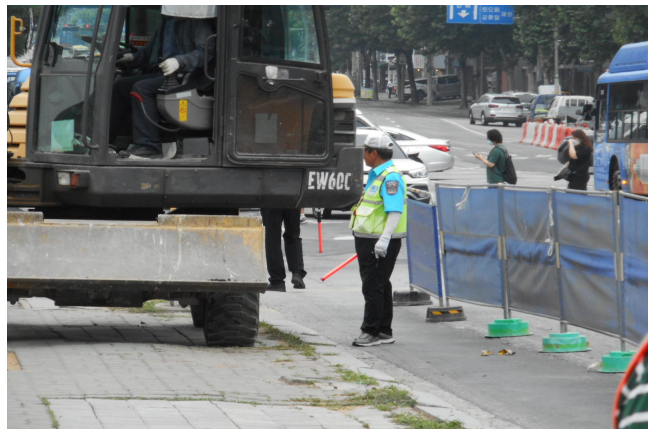
○ 흙막이가시설 안전(토목부)

- 상수관 이설공사에서 간이 흙막이가시설(TS판넬)을 이용하여 2.5 ~ 3.0m까지 굴착과 해체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흙막이가시설 굴착 및 해체에 대한 컨설팅이 미수행된 상태이므로 조속히 요청하여 시행 요망
- ※ 2020년 안전관리과 업무보고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건설기계 안전(토목부)

- 교통 통제원(모범운전자)은 본 임무인 교통통제에 집중하고 불가피하게 현장 장비 인근에 위치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관리 요망
- 상수관 이설공사 작업장은 도로 중간에 위치하여 양방향으로 차량이 소통되고 있으므로 자재나 장비에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시설 확장설



치 요망

- B.P. 작업장 굴삭기 운전원은 시공을 켜고 버킷이 떠 있는 상태로 외부로 나와 차량정비를 하고 있어 오작동에 의한 사고위험이 큰 상태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요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200조(접촉방지),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시 조치)

※ 건설안전 기본지침(개정) 공통-032(굴삭기)



○ 기계기구 안전(토목부)

- 카리프트 바닥면에 있는 완충장치 중 터널 작업장 측 두 개소가 콘크리트 부산물이 쌓여 균열 경우 완충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균기 전에 수시로 청소 요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토목부)

- 상수관 이설공사에 비치된 위험물보관소에 위험물 외의 다른 물건들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요망

※ 건설안전 기본지침(개정) 공통-024(위험물 보관소)





○ [모범사례]기타 안전관리(토목부)

- 터널 막장에 사용 중인 투광등 대차는 소분전반에 수정등을 부착하고 콘센트도 외부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소켓으로 장착하고 누전 차단기가 있는 3상과 연결한 우수사례



○ [모범사례]기타 안전관리(토목부)

- 자동 살수장치를 높은 곳에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최소화하는 우수사례

